

##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인 CDIB 와 최대주주인 박현주회장의 미래에셋그룹 핵심계열사들이 모두 연루된 주가조작혐의

가장 도덕적이고 선관의무를 철저히 지켜야할 금융기관, 우리나라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의 핵심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로서,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유일한 상장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였던 CDIB 펀드들 - 조세회피처(라부앙,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해외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미래에셋생명 및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통정매매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고가에 매입하고 시세조종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먼저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로서 이 사안은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번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조사.규명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더 의혹이 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인 CDIB 는 2006 년 2 월 15 일 상장하자마자 2006 년 2 월 17 일과 3 월 9 일에 이틀동안 150 만주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이는 당시 일평균거래량의 약 10 배에서 20 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특히 2 대주주가 대량매각하는 것이 알려지면 큰 폭의 주가하락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동 매도물량이 모두 매각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CDIB 의 매도물량 150 만주중 140 만주를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매입하여 CDIB 는 고가에 대량매물을 모두 매각하여 수백억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게 된다.

장중대량매매는 정상적인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즉 가격/수량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장중대량매매는 매수/매도 원주문자들이 서로 알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래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통정매매로서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가 언론에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가 매도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하여 거래한 것임을 실토하여 거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 미래에셋 대만 주주 252억 차익 ·· CDIB, 50만주 매각

### 한국경제

기사입력 2006-02-22 17:34 | 최종수정 2006-02-22 17:34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CDIB측이 장기간 투자한 데다 규제 등의 문제로 지분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래에셋생명의 고유자산으로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또한, 장중대량매매의 경우에 가격과 수량이 동일하여야 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밝힌 금감원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CDIB 간의 거래수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장중대량매매의 기본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보면 2006년 3월 9일 CDIB의 100만주 매도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5만주를 매수 주문하여 장중대량매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45만주를 초과주문하는 것을 통하여 일평균거래량의 약 20배에 달하는 100만주의 2대주주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매수주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시세조종의 불법혐의도 의심되는 것이다.

#### ? 인정되는 사실

- ①2006. 2. 17. 씨디아아이비 벤처가 미래에셋증권 주식 50만 주를 주당 62,000원에 매도주문 하고,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같은 주식 50만 주를 주당 62,000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50만주가 체결되게 한 사실, ②2006. 3. 9. 씨디아아이비 벤처가 미래에셋증권 주식 78만주를 주당 61,500원에 4회에 걸쳐 매도주문하고, 씨디아아이비 캐피탈이 같은 주식 22만주를 주당 같은 가격에 매도주문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같은 날 같은 주식 총 145만주를 주당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하여, 그 결과 총 90만주가 체결되게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기록 제24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검찰불기소처분이유서 20160509>

이러한 거래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자체적 판단없이 금감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신고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매도의 원주문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통정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법적인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기본적인 장중대량매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수량이 상이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장중대량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장중대량매매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판단

- 2014. 8.경 금융감독원에서 위 주식거래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씨디아-이비 벤처, 씨디아이비 캐피탈이 매도한 미래에셋증권 주식 150만주 중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장중대량매매방식 장중대량매매방식 : 회원사와 거래소간 전용 네트워크(K-BoX)를 통해 주문·체결되는 방식으로, 2005. 3. 대량매매 수요의 정규시장 유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으로 140만주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시세조종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 제175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 설령 고발인의 주장대로 피의자들 또는 위 회사들이 본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거래일인 2006. 3.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8.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본건은 2007. 12. 2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이므로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불기소처분이유서 20160509>

검찰은 미래에셋과 CDIB 간의 거래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최종행위일인 2006 년 3 월 9 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2016 년 3 월 8 일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는 2007 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어 동 조사내용을 재항고장에 기술(재항고장 14 페이지부터 18 페이지 참고)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소한 2017 년 3 월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다음은 시세조종의 불법혐의이다.

시세조종에 관련된 불법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금감원 조사자료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 년 3 월 15 일부터 2006 년 3 월 31 일까지 1,952 회에 걸쳐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나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 년 3 월 15 일부터 2006 년 6 월 30 일까지 3,752 회의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인정되는 사실

- ①미래에셋생명보험이 2006. 3. 15.경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총 30만주가 체결되게 한 사실(기록 제17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제381 내지 42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②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06. 3. 15.경부터 2006. 4. 13.까지 사이에 96회에 걸쳐 매도주문하여, 그 결과 총 32,529주가 체결되게 하고(기록 제17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제425 내지 434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2006. 3. 15.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3,752회에 걸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총 395,356주가 체결되게 한 사실(기록 제178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제435 내지 512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은 각각 인정된다.

<검찰불기소처분이유서 20160509>

동 거래내용을 실제 거래일을 감안하여 주문횟수를 분석하여 보면,

1.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 1 분당 1.2 개의 주문을 9 일동안 총 3,752 회의 주문을 내고,
2. 미래에셋생명은 매 2 분당 1 개의 주문을 10 일동안 총 1,952 회의 주문을 내었으며,
3. 동 주문들이 3 월 15 일부터 4 월 3 일까지 연속해서 두개의 핵심계열사들, 즉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번갈아가면서 매일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래에셋그룹내에서 사전에 기획하여 조직적으로 주문을 낸 것으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의 혐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시세조종의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금융사정당국에서 윈도우드레싱이라는 1 회성 단순한 수익률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감원의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 증선위, 신한BNP 펀드매니저 징계...'윈도우드레싱' 악용

머니투데이 안재웅 기자 | 입력 : 2016.09.28 19:43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2819343361742&type=1> 복사

이른바 '윈도우드레싱' 수법을 악용,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2명에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기관은 가장 낮은 수위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저조한 주식을 사 수익률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징계조치를 받은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9월말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이 같은 수법으로 수익률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의 핵심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가 모두 연관되어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이라는 불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두건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 (현재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2017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

하지만,

1.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해외페이퍼컴퍼니인 미래에셋증권의 2 대주주에게 대규모 투자수익을 불법적으로 몰아주어서 1 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고,
2. 동원된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고객자산을 동원하여 대규모 손실을 보게하였으며,
3. 더 나아가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인 박현주회장의 주식가치를 보전하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 매우 죄질이 높은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금융사정당국은 자본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큰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이 2 대주주, 그것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해외페이퍼컴퍼니인 CDIB 펀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게 공모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불법적 일탈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통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단순히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매매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재벌계열사들이 대주주의 주식을 계열사들에서 장중대량매매를 통하여 고가에 매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금융사정당국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감독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